

제1442호
2016. 6. 23(목)

발행인: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집인: 홍보전산과장 이 진 근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기관의 장
람	

동 직 구 보

차 례

◎ 조 례

제2016-588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2016-598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고 시

제2016-50호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6

◎ 인 사 발 령 ----- 10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조 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58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안 제1조,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나. 조직개편에 따라 소속국의 국장 명칭 변경(안 제2조1항, 제6조4항)

- 건설교통국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8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0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도로관리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820-1407, FAX : 820-9981, E-mail : kom301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u>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u> 굴착 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u> ----- ----- ----- <u>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굴착복</u> <u>구기금</u> ----- -----.
제2조(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u>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u>건설교통국장</u> 이 관리한다.	제2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u>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u> ----- <u>안전건설교통국장</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1.『도로법』제91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동작구</u> (이하 “구”라한다) 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3조(기금의 재원) 1. ----- <u>서울특별시 동작구</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회계관련공무원)① <u>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u> (이하 “구청장”라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출납원을 둔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련공무원)① <u>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교통국장</u> 이 된다.	④ ----- <u>안전건설교통국장</u> -----.
<신 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59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1. 개 정 이 유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 중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법규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삭제 (안 제8조제3항)

3. 의 견 제 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참조 : 보건위생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 820-1600, FAX : 820-4030, E-mail : seo0913@dongjak.go.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같은항 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 ⑦ (생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⑦ (현행과 같음)

고 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50호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호(2011.1.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3-98호(2013.8.22.), 동작구고시 제2014-72호(2014.07.10.), 동작구고시 제2015-80호(2015.11.05.), 동작구고시 제2016-34호(2016.04.21.)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사당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관계서류는 동작구청 주택과(☎02-820-9946)와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2-598-49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명칭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2) 면적 : 49,108㎡

- 공동주택 획지 : 38,838㎡,

- 정비기반시설 등 : 10,270㎡ (도로: 4,666㎡, 소공원1: 1,665㎡,

소공원2: 3,671㎡, 공공공지: 222㎡, 학교공지: 4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자 : 전병복)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188, 상가2층(사당동, 삼호그린아파트)

(☎ 02-598-4945)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

마.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6년 6월 16일(사업시행인가일 2014년 1월 13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사당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49,108	획지	38,838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25% 이하	245% 이하	60m이하 최고1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비고		
		계		959				
		60㎡이하		468				
		60~85㎡이하		488				
		85㎡초과		3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49	59A	59A-1	59B	59T	84A	84B	84C	84C-1	84D	97
계		17	959	38	281	51	92	6	69	82	268	35	34	3
분양	공동주택 (아파트)	17	959	38	281	51	92	6	69	82	268	35	34	3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01	10	집산 도로	69.8	사당동 189-8	사당동 181-188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16)	
기정	중로	3	1002	10~ 12	집산 도로	295.7	사당동 190-146	사당동 181-365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16)	
변경	중로	3	1002	10~ 20	집산 도로	295.7	사당동 190-146	사당동 181-365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16)	
기정	소로	2	1003	8	기타 도로	33.7	사당동 189-20	사당동 189-9	일반 도로	-	서고2011-2호 (11.01.16)	
기정	소로	3	-	6~ 15	기타 도로	409.3 (136.6)	사당동 188-1	사당동 190-133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5.0	상도동 111-5	상도동 410-1	일반 도로	-	동고2013-98호 (13.08.22)	

주 1) ()안은 지구 내 확폭 연장임

※ 중로 3-1002 변경사유 : 도로폭원 오기로 인한 정정

나) 철 도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점	종 점				
기정	도시 철도	도시 철도	도봉동 16번지 일대	가산동 안양천 (광명시경계)	43,760	-	서고제1999-353 (99.10.25)	

다) 공 원 :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원	소공원1	사당동 181-376번지 일원	1,680.0	감) 15.0	1,665.0	서고2011-2호 (11.01.16)	
변경	공원	소공원2	사당동 181-221번지 일원	4,248.0	감) 577.0	3,671.0	서고2011-2호 (11.01.16)	도시철도 중복지정

라)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사당동 181번지 일대	222.0	-	222.0	서고2011-2호 (11.01.16)	

마) 학 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학교	중학교	사당동 181-20번지 일원	20,010	-	20,010 (46)	서고 399호 (79.08.08)	구역 일부편입

2)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연번	시 설 명	관리청별	소재지	지목	공부상 (㎡)	편입 (㎡)	점유 (㎡)	비점유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도 토지(㎡)	비고
합 계					977	977	135	328	514	
1	도로	재경부	사당동	도	80	80	0	0	80	
2	도로	재경부	사당동	도	155	155	0	155	0	
3	도로	재경부	사당동	대	144	144	0	144	0	
4	도로	재경부	사당동	대	30	30	27	3	0	
소 계					409	409	27	302	80	
5	도로	국토해양부	사당동	천	568	568	108	26	434	원상복귀로 인한 비점유 (26㎡)
소 계					568	568	108	26	434	

차. 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의 사업시행변경인가(건축계획 변경 등) 신청

카. 변경내용

1)건축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사당2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49,062	택지	38,260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5% 이하	245% 이하	60m이하 최고18층
변경		49,108	획지	38,838	동작구 사당동 1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25% 이하	245% 이하	60m이하 최고1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64	감) 5	959	
					60㎡이하	481	감) 13	468	
					60~85㎡이하	481	증) 7	488	
					85㎡초과	2	증) 1	3	

인사발령

【발령 제110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허유은	복합직을명함 행정국사회적마울과근무를명함	노량진제2동	지방행정서기

2016. 6. 19字.

【발령 제111호】

연번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1	전정희	동작구전입을명함 노량진제1동근무를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보
2	장경진	성북구전출을명함	사회적마울과	지방행정서기

2016. 6. 20字.

【발령 제112호】

성명	발령사항	현직	
		부서	직급
류화숙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2호에 의거 당연퇴직 (임용기간 : 2011.6.21~2016.6.20)	보건기획과	임기제지방 보건진료주사
	임기제지방보건진료주사(치과의사)에 임함 보건소근무를명함 (임용기간 : 2016.6.21~2018.6.20)	신규	임용

2016. 6. 21字.

동
작
구
보

제
1
4
4
2
호

동
작
구



www.dongjak.go.kr

 **동 직 구**